

감 사 보 고 서

본인은 바이오플러스 주식회사의 감사로서,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7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.

[1] 감사방법의 개요

(1) 회계에 관한 감사

회계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열람하고,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·실사·입회·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.

(2) 업무에 관한 감사

업무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,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.

[2] 회계장부의 기재등에 관한 사항

회계장부에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된 사항은 없으며,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은 회계장부와 합치되고 있습니다.

[3]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

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[4]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

영업보고서는 상법 및 동법시행령,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[5] 자본변동표[또는 이익잉여금(결손금)처분(처리)계산서]에 관한 사항

회사의 자본변동표[또는 이익잉여금(결손금)처분(처리)계산서]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,

회사의 재무상태와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.

[6]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

상법 제447조에 의한 부속명세서 상에 기재 누락 내지 부실기재사항은 없으며, 회계장부 또는 재무제표 또는 영업보고서상의 기재 내용과 일치합니다.

[7]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

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행위 내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.

2020년 3월 일

바이오플러스 주식회사
감 사 조 용 준